

부산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4824, 2020나54831(병합), 2020나54848(병합),
2020나54855(병합), 2020나54862(병합), 2020나54879(병합), 2020나54886(병합),
2020나54893(병합), 2020나54909(병합), 2020나54916(병합), 2020나54923(병합),
2020나54930(병합), 2020나54947(병합), 2020나54954(병합), 2020나54961(병합),
2020나54978(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4824, 2020나54831(병합), 2020나54848(병합),
2020나54855(병합), 2020나54862(병합), 2020나54879(병합), 2020나54886(병합),
2020나54893(병합), 2020나54909(병합), 2020나54916(병합), 2020나54923(병합),
2020나54930(병합), 2020나54947(병합), 2020나54954(병합), 2020나54961(병합),
2020나54978(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6가합47952, 2016가합48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J

36. AI

37. AK

38. A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박상욱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M(변경 전: 주식회사 A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 종결2021. 4. 22.

판결 선고2021. 5. 27.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6가합47952, 2016가합48986(병합),
2016가합49194(병합), 2016가합50019(병합), 2017가합40415(병합), 2017가합41470(병합),
2017가합41951(병합), 2017가합42329(병합), 2017가합42480(병합), 2017가합43421(병합),
2017가합43513(병합), 2017가합43681(병합), 2017가합44035(병합), 2017가합46505(병합),
2017가합47157(병합), 2017가합47768(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의료법인 AN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22.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8면 제7행부터 제21면 12행까지를 아래의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소외 재단의 무자력 상태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2015. 6. 22. 시점), 이미 퇴직한 직원들 또는 조만간 퇴직할 직원들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려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재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채무 중, ① 2015. 1. 1.부터 2015. 6. 22.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755,691,325원, ② 2015. 6. 23.부터 2015. 12. 31.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1,558,338,246원, ③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12,164,544,91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7. 7. 14.까지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2015. 6. 22. 시점으로 9,223,136,875원 상당의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주장처럼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해 그러한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금정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던 소외 재단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2014. 12. 31. 현재 자산총계 92,006,037,824원(그 중 비유동자산은 86,494,466,307원), 부채총계 81,358,338,266원, 자본총계 10,647,699,558원이고, 2015. 12. 31. 현재 자산총계 92,038,441,694원(그 중 비유동자산은 86,353,103,517원), 부채총계 80,843,572,354원, 자본총계 11,194,869,340원으로, 2015년말까지도 여전히 부채총계를 넘는 비유동자산을 보유하면서 자본잠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재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② 2013.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4,076,580,000원(갑 제3호증), 2014.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2,165,750,770원(을 제5호증의 1), 2015.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8,044,646,017원(을 제5호증의 2)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채무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서, 원고들 주장 금액 전부를 단순히 소극재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외 재단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소외 재단에 대한 파산사건 처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기준일에는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 채권액 1,000억 원은 장래채권으로서 소외 재단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외 재단의 적극재산이 곧바로 감소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가 수령하기로 한 금액은 30억 원 대출에 대한 매달 원리금 92,220,350원씩 36개월의 합계 3,319,932,600원(=92,220,350원 × 36)이 전부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중 매달 위 92,220,350원을 초과하는 돈은 대부분 소외 재단으로 지급되었는데도, 위 1,000억 원 전액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4, 제15, 16호증의 각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재단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장래 변제자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5. 6. 22.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직원 550여명이 임금 50%를 반납하는 등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건 30억 대출은 그러한 재정상태와 영업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직원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20억 원) 및 노인병동 증축 투자금(10억 원) 용도로 피고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소외 재단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로부터 긴급히 30억 원의 자금을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장래채권을 양도하였다.
- ④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양도한 장래채권 금액 1,000억 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상환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하여 40개월간의 담보를 산정(=2,500,000,000원 × 40개월)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위 금액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⑤ 소외 재단은 피고에게 양도한 장래채권 중 매월 92,220,350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피고는 위 정산을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최환

판사최희영

별지